



2011년 2월 7일(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 : 안전품질정책과 권규섭 과장(02-509-7238), 배진한 연구사(02-509-7238)

제품안전기본법 2월5일 본격 시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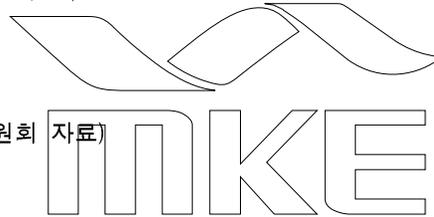
- 위해제품에 대한 언론공개, 사업자 리콜 미 이행시 정부가 집행하고 비용 징수 -

□ 지식경제부(기술표준원)는 제품에 결함이 있을 경우 기업이 자발적으로 리콜하도록 유도하는 등의 규정이 담긴 「제품안전기본법」이 2월 5일 시행되었다고 발표함

○ 생활제품(공산품)에 대한 국내 기업의 자발적 리콜조치는 미국·일본·EU 등에 비해 저조한 실정이다. 그러나, 이 법의 본격 시행으로 기업의 자발적 리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

<주요국의 생활제품 리콜건수>

- * 미국 리콜건수 : '08년 564건, '09년 466건 (미국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자료)
- * 일본 리콜건수 : '08년 106건, '09년 94건 (경제산업성 자료)
- * 한국 리콜건수 : '08년 0건, '09년 29건



□ 동법 시행을 통해 제조·설계·표시 등의 제품결함으로 소비자의 신체·재산에 위해를 입혔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해 정부(기표원)는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, 그 결과 위해성이 판명되면 업체에 자발적 리콜을 권고하거나 강제리콜을 명령하게 됨

○ 또한, 리콜사실을 언론에 공표함으로써 제품안전사고 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하게 되며, 기업이 리콜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, 정부가 이를 수행하고 그 비용을 징수하는 근거규정도 마련함

- * 중대한 결함은 리콜명령, 경결함 제품은 리콜권고가 원칙이나 각각의 경우 사업자의 자발리콜 조치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계도
- * 리콜방법 : 수리, 교환, 환급, 수거, 파기, 개선조치 및 제조·유통의 금지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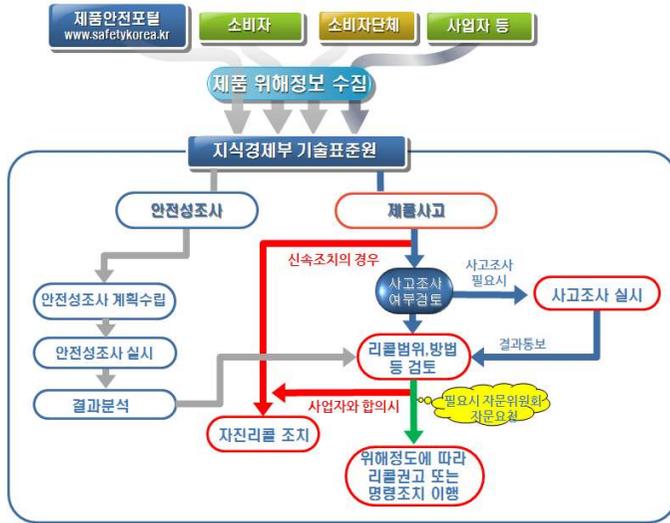
○ 더불어, 생활제품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시 이를 조사하고 그 결과 위해성이 판명되면 기업에 리콜을 권고 또는 명령하는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제품사고로부터 소비자의 안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될 전망이다

□ 기술표준원은 앞으로 업종별 전문시험기관 등을 제품사고조사센터로 지정하고, 위해성 평가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을 위해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제도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다.

<첨부 1> 제품리콜절차 흐름도

<첨부 2> 제품안전기본법 및 시행령 주요내용

제품리콜절차 흐름도



※ 제품 위해정보 수집후 업무처리절차

① 안전성조사 필요시

- 기표원은 자체조사계획 또는 소비자 요청에 따라 안전성조사 시행
- 안전성조사 실시후 결과분석후 사업자와 협의 또는 리콜권고/명령

② 제품사고에 따른 조치

- 신속조치제도 :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리콜할 경우, 방법등을 협의하여 신속하게 자발적 리콜을 이행(이 경우 행정절차는 중지)
- 제품사고에 따른 리콜조치 절차 : 기표원이 사고조사센터에 조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에 대한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자발적 리콜 협의 또는 리콜권고/명령·언론공표 조치

「제품안전기본법」

1. 「제품안전기본법」 제정 배경

- 그간 제품안전관리 체계는 분야별 개별법에 따라 제품의 제조 및 출하단계의 안전관리에 치중

구 분	전기용품	공산품
법률	「전기용품안전 관리법」	「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」
대상 품목수	안전인증 : 53종, 자율안전 : 93종	안전인증:14종, 자율안전:47종, 품질표시:30종, 보호포장:7종

- 제품 안전사고의 예방 및 효과적 사후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 미흡
 - 현재 개별법에 의한 규정은 제품리콜, 사고제품의 조사 및 언론공표 등 실질적 제품 안전관리에 한계

* 개선, 수거 등의 명령은 시·도지사의 권한이나 행정조치에 매우 소극적

- 제품안전에 관한 통일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개별법간의 공동 목적 달성을 위해 「제품안전기본법」 제정('10.24 공포)
 - 시행령 공포('11.1.28, 시행일 '11.2.5)

<주요 국가의 제품안전 개요>

구분	미국	일본	영국
기관명	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(CPSC)	경제산업성(METI) 제품평가기술반기구 (NITE)	건강안전위원회 (HSE)
관련법	소비자제품안전법	소비생활용품제품안전법	건강안전노동에 관한 법
주요업무	· 제품유통 중단 · 리콜권고, 명령	· 리콜 · 체제정비명령	· 모든제품 안전성조사 · 사업자에 리콜의무
제도시행	1999년	2007년	1994년

2. 「제품안전기본법」 제정 추진경위

- 배은희 의원(한나라당) 대표발의 : '08.11.14
- 제정안 국회 심의·의결 : 지경위(11.26), 법사위(12.28)
- 국회 본회의 통과('09.12.30) 및 「제품안전기본법」 제정 공포('10.2.4)
- 시행령 입법예고('10.7.1) 및 공포('11.1.28)

3. 「제품안전기본법」 주요내용

< 제품안전기본법 요약 >

- ① 중대결함이 있는 제품은 리콜을 명령함과 동시에 그 사실을 언론에 공표
- ② 제품 위해사실을 인지할 경우, 사업자의 보고 및 자발적 조치 의무 규정
- ③ 위해제품 수거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사업자에게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
- ④ 제품사고의 원인분석과 재발방지를 위한 사고조사센터 지정, 운영
- ⑤ 제품안전협회 설립, R&D 지원 법적근거 마련 등 제품안전체계 정비

-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공표
- 권고를 이행한 사업자는 조치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

라. 제품 수거 등의 명령(제11조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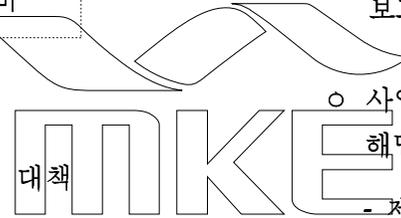
- 다음과 같이 중대결함이 있는 제품 등은 제품 수거 등을 명령하고, 그 사실을 언론에 공표

- * 안전성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
- *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
- * 중대한 결함으로 인하여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

- 명령을 이행한 사업자는 조치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

가.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(제7조)

- 제품안전정책 목표, 제품안전기반 조성, 제품사고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제품안전종합계획을 수립



- 사업자가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,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해당 제품의 수거 등을 할 수 있음
- 제품 수거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제품의 사업자에게 징수

나. 안전성조사(제9조)

- 제품 결함으로 소비자의 생명·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, 시중 유통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
- 안전성조사 내용 및 결과는 해당 사업자에게 열람이 가능

마. 권고 등의 해제신청(제12조)

- 제품수거 등을 권고·명령 받은 사업자가 이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권고·명령의 일부 또는 전부의 해제를 신청
-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30일 이내에 권고·명령의 일부 또는 전부의 해제여부를 결정(30일 이내 연장 가능)

다. 제품 수거 등의 권고(제10조)

- 위해성이 경미한 사항은 제품수거 등을 권고하고, 해당 사업자가

바. 사업자의 제품수거 등의 의무(제13조)

- 사업자가 자사 제품의 위해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, 이를 소관 중앙

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, 제품수거 등의 자발적 조치를 이행

- 제품 수거등을 자발적으로 이행한 사업자는 조치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

사. 내부자 신고 등(제14조)

- 사업자가 제품의 중대결함을 숨기는 경우, 해당 사업자의 고용인은 그 사실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음
- 사업자는 신고를 이유로 해당 고용인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으며,
 -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불이익 처분의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해당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음

아. 제품사고 관련 자료제출 요청 등(제15조)

- 제품 사고가 발생한 경우, 사고원인을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사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
- 해당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자료를 제출

자. 제품안전관리의 기반조성 등(제16조, 제18조, 제21조)

- 제품안전정책의 수립·집행과 제품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제품안전정보망을 구축, 운영
- 제품안전에 관한 연구와 기술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
- 제품의 제조업자와 유통업자는 제품의 품질향상과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제품안전협회를 설립

차. 벌칙 (제26조)

-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

- 제품 수거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(제11조제1항)

- 제품 자진수거 등을 하지 아니한 자 (제13조제1항)

-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자 (제23조제2항)

* 조사, 보고, 신고 또는 제출된 자료 등으로 알게 된 내용을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

○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

- 직무상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목적외 사용 (제23조제1항)

○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

- 내부자신고를 한 고용인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고,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(제14조제2항)

카. 과태료 (제27조)

○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

- 제품사고와 관련한 자료제출 요구에 특별한 사유 없이 불응

○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

- 제품 수거등의 권고·명령에 따른 조치의 결과 등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

- 사업자가 제품의 중대한 결함의 내용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

- 제품수거 실적 등의 사항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

- 한국제품안전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

4. 「제품안전기본법」 시행령 제정 주요내용

가. 종합계획의 수립 (제2조)

- 지식경제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

장 및 시·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

- 수립된 종합계획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·도지사에게 통보

나. 안전성조사의 절차 등 (제4조, 제5조)

-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안전성조사를 할 때 필요시 시험·검사기관 등에 시험·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음
- 안전성조사 결과는 3년간 보관하고, 해당 사업자가 안전성 조사 결과를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함

다. 수거 등의 권고절차 (제6조)

- 제품수거 등을 권고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다음 사항을 명시해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함

- * 해당제품의 제품명·상표·모델명
- * 해당제품의 제조·수입업자의 상호 및 그 대표자의 성명
- * 권고의 사유 및 내용
- * 수락여부 통지기한 및 수락거부시의 조치 등

- 수거 등의 권고를 받은 사업자는 10일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사항을 명시해 서면으로 수락여부를 통지하여야 함

- * 사업자의 상호 및 그 대표자의 성명
- * 권고의 수락여부
- * 수거등의 시기·방법 등 조치계획

라. 공표의 방법 (제7조)

- 제품결함에 따른 위해성이 확인되었을 경우, 다음 사항을 포함한 내용을 제품안전정보망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음

- * 해당 제품의 제품명·상표·모델명
- * 해당제품의 일련번호 및 로트번호
- * 권고의 사유 및 내용 등

마. 제품수거 등의 결과보고 등 (제8조, 제11조)

- 제품 수거 등을 한 경우, 해당 사업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

수거 등의 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

- * 수거 등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고 또는 명령사항
- * 수거 등의 내용과 실적
- * 수거 등을 이행하지 못한 제품에 대한 조치계획 등

바. 수거 등의 명령절차 (제9조)

- 제품수거 등을 명령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다음 사항을 명시한 문서(전자문서 포함)로 통보

- * 해당 제품의 제품명·상표·모델명
- * 해당 제품의 일련번호 또는 로트번호
- * 수거 등 명령의 사유 및 내용
- * 수거 등의 시기 및 방법

사. 중대한 결함의 범위 (제10조)

- 사망, 4주 이상의 부상·질병, 화재를 일으킨 제품결함 등 중대 결함의 범위를 규정

아. 제품의 직접수거 등의 조치 (제12조)

- 제품 수거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사업자에게 징수할 수 있으며 징수절차 및 방법은 국고금관리법령을 준용

자. 제품 수거 등의 권고·명령 해제신청 (제13조)

- 제품 수거 등의 권고·명령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업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해제신청서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

- * 신청인의 이름·생년월일 및 주소와 연락처
- * 해제신청의 대상이 되는 수거 등의 권고·명령의 내용
- * 해제신청의 취지 및 이유 등

-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거 등의 권고·명령에 대한 해제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즉시 통보

차. 제품 자진수거 등의 방법 (제14조)

- 사업자는 제품의 위해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제품의 수거 등을 위한 계획서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

- * 해당 제품의 제품명·상표·종류·등급·호칭 등
- * 해당제품의 품목번호 및 제조연월일
- * 결함과 위해의 내용 및 원인
- * 해당제품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해 및 주의사항
- * 수거 등의 조치방법과 기간 등

-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출한 시정계획서가 미흡하다고 인정되면 그 계획서의 보완을 요구

카. 제품 사고조사 및 자료제출 요구(제15조, 제16조, 제17조)

-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품 사고조사를 위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

- * 해당 제품의 제조·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에 관한 자료
- * 제조 유통한 제품의 수량 및 판매 등에 관한 자료
- * 사고의 경위와 원인의 파악에 필요한 자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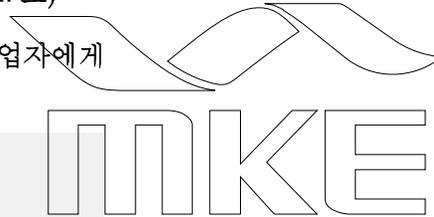
-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시 지정된 제품사고조사센터의 직원에게 제품사고와 관련된 시설 또는 장소를 방문하여 제품 또는 자료 등을 조사하거나 감정하게 할수 있음

-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사항을 만족하는 분야별 전문기관 및 단체를 사고조사센터로 지정

- *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일것
- * 제품사고 조사를 전담하는 조직을 갖추고 있을것
- * 사업자로부터 직접적인 재정지원을 받지 아니할 것 등

-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품안전정보망을 구축하는 경우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제품안전정보망과 연계 대책을 수립
- 제품안전에 관한 홍보
- 제품안전 연구·기술개발 자금의 지급기준 및 사용·관리에 관한 규정 등

파. 과태료의 부과·징수 절차(제26조) 등



타. 제품안전관리의 기반조성 등(제18조 ~ 제25조)